**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**  

**안전시설 등의 설치**

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[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2](http://www.law.go.kr/lsBylInfoPLinkR.do?bylCls=BE&lsNm=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B3%84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A%B7%9C%EC%B9%99&bylNo=0002&bylBrNo=00)에 따라 설치·유지해야 합니다([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JO&lsNm=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B3%84%EB%B2%95&joNo=000900000&languageType=KO&paras=1) 전단, [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JO&lsNm=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B3%84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B%A0%B9&joNo=000900000&languageType=KO&paras=1), [별표 1의2](http://www.law.go.kr/lsBylInfoPLinkR.do?bylCls=BE&lsNm=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B3%84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B%A0%B9&bylNo=0001&bylBrNo=02) 및[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9조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JO&lsNm=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B3%84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A%B7%9C%EC%B9%99&joNo=000900000&languageType=KO&paras=1)).

소방시설 등

가. 소화설비 :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

나. 경보설비 : 비상벨설비·자동화재탐지설비·가스누설경보기

다. 피난설비 : 피난기구, 피난유도선, 유도등·유도표지·비상조명등·휴대용비상조명등

비상구

영업장 내부 피난통로(구획된 실(室)이 있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에만 설치)

그 밖의 안전시설 : 영상음향차단장치·누전차단기

※ “다중이용업”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([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JO&lsNm=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B3%84%EB%B2%95&joNo=000200000&languageType=KO&paras=1)제1호 및 [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JO&lsNm=%EB%8B%A4%EC%A4%91%EC%9D%B4%EC%9A%A9%EC%97%85%EC%86%8C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B3%84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B%A0%B9&joNo=000200000&languageType=KO&paras=1)제1호).

1. 휴게음식점영업·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(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](http://www.law.go.kr/LSW/LsiJoLinkP.do?docType=JO&lsNm=%EA%B1%B4%EC%B6%95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B%A0%B9&joNo=011900000&languageType=KO&paras=1)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)의 합계가 100제곱미터(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) 이상인 것. 다만, 영업장(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)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.

2.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

**음식점 주방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(K급)를 의무설치 하도록 규정 신설**

 제4조(설치 기준)  [별표4]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

|  |  |
| --- | --- |
| 1. 다음 각목의 시설. 다만, 스프링쿨러설비·간이스프링쿨러설비·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 설치된 경우에는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가. 보일러실(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) · 건조실·세탁소·대량화기취급소나. 음식점(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)·다중이용업소·호텔· 숙사·노유자시설·의료시설·업무시설·공장·장례식장 ·교육연구시설·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, 의료시설 · 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.다.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·송전실 ·변압기실 및 배전반실(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)라.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| 1.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㎡마다 능력단위 1단위 이상의 소화기로 하고, 그 외의 자동확산소화기를 바닥면적 10㎡ 이하는 1개, 10㎡ 초과는2개를 설치할 것.다만,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 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·분말·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|
| 2. 나목의 주방의 경우,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 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(K급)를 설치하여야 한다. |